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 이유

- 2008. 4. 25 행정안전부로부터 조건부 청산명령을 받고 있음
(2009년 말까지 구미원예수출공사가 흑자를 내지 못할 경우)
- 원예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매년 납부하는 토지 대부료를 감면하여 부담을 줄여 줌으로서 금년 말까지 흑자경영 달성코자함
(단, 원예공사가 흑자경영으로 대부료 납부능력이 있는 때에는 본 효력은 상실됨)

3. 주요내용

□ 토지대부 계약내역

- 위 치 : 구미시 옥성면 옥관리 10-1번지 외 32필지
- 대부면적 : 101,594m²(30,732평)
- 대부금액 : 25,553천원
- 대부기간 : 2008. 3. 1 ~ 2010. 2. 28
- 대 부 자 : 구미원예수출공사 사장
- 대부요율 :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(공시지가 기준)

4. 참고사항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34조제1항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13호,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1호

5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2008. 4. 25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 “청산조건부 경영정상화” 결정을 받은 원예공사의 토지 연간 대부료 25,553(천원)을 대부기간 (2008. 3. 1~2010. 2. 28) 중 2년간 대부료 51,106(천원)을 감면받기 위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34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
- 원예수출공사는 1997. 9. 13 구미시 지방공사로 설립되었고, 주 재배 작목은 스프레이 국화 20품종으로 일본을 수출대상국으로 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,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여건으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적자상태이며, 2009년 말까지 흑자경영을 못할 경우 청산명령을 받고 있으므로 경영정상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토지 대부료를 감면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
- 아울러, 원예수출공사에서는 전문기술인력 확보와, 신품종 개발, 일등품 국화 등급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생산성 안정화, 융자잔액 상환 방안의 다각적인 모색으로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한 T/F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위기경영 마인드로 비상경영을 통한 경영 정상화 방안 강구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며
- 향후 융자금 상환 등 경영정상화 조치에 따른 집행기관의 재정 지원 문제는 보다 더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됨